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

2024. 2.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2. 20.

다. 상정일자: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4. 2.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깨끗한마포과)

가. 제안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됨.

나. 제안이유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보상대상(안 제3조)
- 피해보상 요건 및 피해보상금 산정(안 제4조~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조~제11조)
- 수당지급(안 제12조)
- 보험가입(안 제13조)
- 환수(안 제14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기타

가) 입법예고 : 2023. 12. 7. ~ 12. 27. (제출된 의견 없음)

나) 행정규제 사전심사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 평가결과 : 원안 동의

라) 성별영량평가 결과 : 해당 없음

3. 심사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최근 도심공원 및 하천 등의 서식조건 개선으로 도심에서 야생동물의 이동이 늘어나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 짐.
- 이에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꾸준히 자치 입법 제정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어 제출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 보상대상은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단서 조항

으로 제외 대상을 규정함.

- 안 제4조~제5조는 피해보상의 요건과 피해보상금 산정에 대해 규정함.
- 안 제6조~제11조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는 피해보상금 신청인에게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 보험가입은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민안전공제 가입 등과 같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급된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출몰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구민의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손실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칙 15개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각종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 공원이나 하천이 야생동물이 서식에 좋은 조건으로 변화하고 야생동물의 천적이 사라진 가운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시행되는 등 단체위임사무로 마련되어 정부 및 서울시에서 피해보상 관련 조례 제정 촉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 다행히도 현재까지 관내에서는 야생동물이 출몰¹⁾한 경우는 있었지

만, 구민에게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기치 않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마포구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선도적인 조치로 마련된 조례로 보이며, 법률의 구조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임.

- 다만, 피해 보상에 대한 범위를 마포구 관내로 한정할 것인지, 마포구민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등 체류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명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 필요함.

<표 1. 서울시 공원 내 야생동물 출현 사고 현황 및 조치결과(2019~2023.9.)>

연번	기관명	공원명	출현일시	출현 야생동물	사건 내용	조치결과
1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인근)	2021.05.05.	고라니	고라니와 부딪혀 오른쪽 다리 열상	치료비 지급
2	송파구	장지근린공원	2022.07.16.	너구리	너구리 공격으로 인한 찰과상	치료비 지급
3	송파구	장지근린공원	2022.07.17.	너구리	너구리 공격으로 인한 찰과상	치료비 지급
4	노원구	원터근린공원(인근)	2023.05.23.	큰부리까마귀	까마귀에 쏘여 머리 찰과상	치료비 지급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서울 마포구청 인근 멧돼지 2마리 출현...한 마리만 사살(네이버뉴스2019.12.11.)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

[관 계 법 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